



2022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정주시청	↑ 충주, 진천, 정주공항	
청주대학교	정주상공회의소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경부, 중부IC 조치원, 터미널	상당공원	
		• 충북도청	
		↓ 신탄진, 보은, 남정주IC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85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고동로 9 한국고직원공제회 충북회관 3층
Tel. 043)221-2781 / 070-8801-5753~4 Fax. 043)221-2780
E-mail. cbhrd@cjrhrdc.org

 고용노동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기관  청주상공회의소

2022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소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이란?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사업내용

1) 훈련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2) 훈련참여 대상자

- 1) 지원대상산업·직종 재직자 또는 실업자
- 2) 육성산업·직종 재직자 또는 실업자
- 3) 지원대상산업·직종 또는 육성산업·직종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지역인자위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은 충북 RSC 홈페이지 참조

* 훈련참여 대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이 가능한 자만 훈련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의 130%까지 기본 지원
- 1회에 한하여 훈련생 훈련비 전액 지원(자비부담 없음)

훈련생 기타지원

1) 생계비 대부

현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훈련 참여자는 저리로 생계비 지원 가능

'22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신청자격 | ①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대부한도 |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상환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2) 훈련장려금

직업훈련 참여자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동일함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22년 기준)

구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월 최대 11.6만원	월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원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원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6만원

3) 특별훈련수당(지원금 : 20만원)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가능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 ① 훈련과정 | 개별 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② 훈련시간 |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③ 훈련생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